

# 초빙교원규정

- 제정 : 2001. 9. 1.       개정 : 2017. 2. 28.
- 개정 : 2002. 9. 1.       개정 : 2019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     개정 : 2019. 6. 18.
- 개정 : 2013. 5. 15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초빙교원의 자격과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본교 초빙교원의 자격, 임용 등에 관하여 정관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자격)** 초빙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한다. 다만, 연구실적 물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.

1. 고등교육법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7조, 교육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교수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학생지도 및 교수능력이 있는 자
2. 타 대학 소속 전임교원 또는 전임연구원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자
3. 특수한 교과를 교수하기 위한 초빙교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교수자격기준에는 미달하나 당해 분야에 장기간 종사하여 전문가로 인정될 수 있는 자

**제4조(임용절차)** 초빙교원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현장성 높은 실무 직업교육을 위한 경우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

**제5조(임용기간)** 초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단위 연봉계약제로 하며, 재임용할 수 있다.

**제6조(임용의 제한)** 초빙교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임용관계 서류를 부실하게 기재하였거나 허위로 기재한 경우
2. 제7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
3. 전 학기의 출강률이 2/3에 미달한 경우
4. 전 학기의 수업내용이 충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업능력이 부족한 경우
5. 배정된 강의시수가 책임강의시수 미달인 경우(단, 부득이한 사정으로 책임강의시수의 강의를 불가하여 총장의 허가를 득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)
6. 최근 임용기간 중 업적평가 평균 70점에 미달한 경우

**제7조(임무)** 초빙교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.

1. 주당 9시간 이상의 강의(실험·실습 포함) (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9시간 강의를 불가하여

4-1-20 초빙교원 규정

총장의 허가를 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)

2. 교육관계 법령 및 본교에 관련된 정관과 제 규정의 준수

3. 본교 임용기간 중에 발표하는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“수원과학대학교 초빙교원” 임을 밝히는 행위

제8조(처우) 초빙교원의 처우에 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부 칙

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